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46

발의연월일 : 2019. 4. 5.

발 의 자 : 김상희・이규희・신창현
김세연・김병기・변재일
전재수・이인영・유성엽
기동민・원혜영・윤종필
인재근・정성호・김관영
박주선・박지원・오제세
안호영・윤소하・신경민
이상헌・정춘숙・심기준
송갑석・이상민・천정배
신동근・이용호・서영교
김종회・김광수 의원
(3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조산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의안번호 제196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한의사·조산사”를 “한의사와 「간호·조산법」에 따른 조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을 “「간호·조산법」 제18조 각 호의 업무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을 “「간호·조산법」 제15조 각 호의 업무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임산부 및 신생아”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를 “「간호·조산법」 제6조(간호사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7조(조산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80조”를 “「간호·조산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의2ㆍ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산사 및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조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한의사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를 “제5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를 “제5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의 종별로”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구분하여”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80조에 따른”을 “「간호·조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진료나 조산”을 “진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료인이나”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으로,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를 “의료업무”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료인은”을 각각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으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진료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인이나”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인이나”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의무기록”을 “전자의무기록(「간호·조산법」 제24조에 따른 전자기록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료인이나”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제26조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를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의료인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의사회·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로, “각각 설립”을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으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를 “협력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하며, 조산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이송·처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본문 중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부등 및 「간호·조산법」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간호기록부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부등 또는 간호기록부등”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한다.

제60조의3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를 “진료기록부”로 한다.

제66조제4항 중 “의료인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로 한다.

제66조의2 중 “의료인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로 한다.

제78조・제80조・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제92조제3항제3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간호·조산법」 제23조에 따른 간호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산원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의사를 정하여 조산원을 개설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처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산원 개설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이송·처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2조(의료인) ① ----------한의사와 「간호·조산법」에 따른 조산사----------.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4. ---------「간호·조산법」 제18조 각 호의 업무를----------.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조산법」 제15조 각 호의 업무를----------.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삭 제>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삭 제>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삭 제>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삭 제>
제3조(의료기관) ① (생 략)	제3조(의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임산부 및 신생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	④ ----------

(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간호·조산법」 제7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6조(간호사를 말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간호·조산법」 제2조제3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삭 제>

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	<삭 제>	

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삭 제>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8조(결격사유 등) ----------. 다만, 조산사 및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조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국가시험 등)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제9조(국가시험 등) ① ----------한의사 국가시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 ----------제5조에----------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5조에----------.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구분하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조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진료----------.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②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의료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진료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전자의무기록(「간호·조산법」 제24조에 따른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	④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다.	----------.
제25조(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 ①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사회·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설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③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협조 의무) ①·② (생략)	제30조(협조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제33조(개설 등) ① ~ ⑤ (생략)	제33조(개설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⑥ ----------협력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하며, 조산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

	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이송·처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생 략)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② ----------진료기록부등 및 「간호·조산법」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간호기록부등----------. ----------진료기록부등 또는 간호기록부등----------.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3.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4.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5.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진료기록부-------.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 ③ (생 략)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78조(전문간호사) ① 보건복지	<삭 제>

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삭 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	

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삭 제>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삭 제>
제83조(경비 보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	제83조(경비 보조 등) ① ----------

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85조(수수료)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9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3.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	----------아니하거나 「간호·조산법」 제23조에 따른 간호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